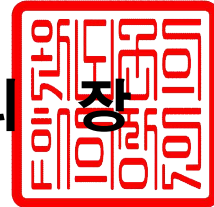


##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 의 자 : 김양훈 의원

3. 개정이유

-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지원대상(안 제4조)
- 심의위원회 구성변경(안 제7조)
- 학교장등의 의무(안 제8조)
- 지도·감독(안 제9조)

#### 5.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6. 조례안 예고기간 : 2023. 3. 31 ~ 2023. 4. 5.

#### 7. 의견제출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6, FAX: 061-550-5907)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전화: 061-550-59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 의장 귀하

##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수·축산물”을 “농수산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수·축산물”이란”을 “농수산물”이란 생산·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하고”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농·축·수산물”을 “농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농·축산물”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를 ““식품비”란”으로, “주식, 부식 및”을 “사용되는 주식, 부식,”으로, “농·수·축산물과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농수산물 및 가공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수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바.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완도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사.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상당한 이동거리로 인하여 변질·변경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4.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말한다.

5. “급식비”란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등 급식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축산물”을 “농수산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은 완도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 중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도군 급식관련과장과 완도교육지원청 급식관련과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을 제외한”을 “당연직 위원은 완도군, 완도교육지원청 학교급식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으로, “해당된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추천한 의원1인”을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6호) 중 “학교급식”을 “영양사 등 학교급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학교급식업무담당주사가”를 “학교급식업무담당팀장이”로 한다.

2. 학부모단체 또는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업관련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8조제1항 중 “농·수·축산물”을 “농수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완도교육장에게 보고”를 “완도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통보한다”를 “제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학교급식을 지원받은 학교등은 군수가 학교급식 지도·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급식 관련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하고,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우수식재료를 무상으로 수거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필요한 조치를”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등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학교급식”으로, “농·수·축산물”을 “농수산물”로, “지도 감독 할 수 있다”를 “지도·감독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등이 제8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된 식품비를 교부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을 경우에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u>농·수·축산물</u>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학교급식</u>”이란 다음 각 목의 대표자가(이하 “<u>학교장등</u>”이라 한다.) 해당 학생·유치원·영유아(이하 “<u>학생등</u>”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가. 「<u>학교급식법</u>」 제4조에 따른 <u>학교</u></p> <p>나. 「<u>유아교육법</u>」 제7조에 따른 <u>유치원</u></p> <p>다. 「<u>영유아보육법</u>」 제10조에 따른 <u>어린이집</u></p> <p>2. “<u>우수 농·수·축산물</u>”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u>아니한</u> 안전하고 신선한 <u>농·축·수산물</u></p>	<p>제1조(목적) ----- ----- ----- ----- <u>농수산물</u> ----- -----.</p> <p>제2조(정의) ----- -----.</p> <p>1. “<u>학교급식</u>”이란 <u>제1조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u></p> <p>2. --- <u>농수산물</u>”이란 <u>생산·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하고</u> --- ----- <u>않은</u> -----</p>

및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농·축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수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식품

<신 설>

----- 농수산물 -----  
-----  
-----.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수산물

나. -----  
-----  
-----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신 설>

<신 설>

<신 설>

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 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및 간식 등을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신 설>

바.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완도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사.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상당한 이동거리로 인하여 변질·변경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에서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3. “식품비”란 -----  
-----  
---- 사용되는 주식, 부식, --  
-----  
-- 농수산물 및 가공품-----  
-----.

4.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말한다.

5. “급식비”란 식품비와 급식운

제3조(식품비등 지원) ① (생략)

② 군수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할 경우 우수 농·수·축산물 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완도군 관내에

소재하고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등을 지원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 ③ (생략)

④ 완도군 급식관련과장과 완도교육지원청 급식관련과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영비 등 급식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식품비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농수산물 -----  
-----.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은 완도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 중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완도군, 완도교육지원청 학교급식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  
-----  
----- 해당하는 사람 -----  
-----.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2. 학부모단체

3. 교원단체

4. 농업인단체

5. 관련 전문가(영양사 포함)1인

6. 그 밖에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⑤ (생략)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생략)

제8조(학교장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학교장등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등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완도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군수에게 직접 통보한다.

1. ----- 추천하는 군의원

2. 학부모단체 또는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업관련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5. ----- 영양사 등 학교급식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학교급식업무담당팀장이 -  
-----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학교장등의 의무) ① ----  
-----  
농수산물-----  
-----.

② -----  
-- 완도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  
----. ----- 제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완도교육장은 학교등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신 설>

③ 학교급식을 지원받은 학교등은 군수가 학교급식 지도·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급식 관련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하고,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우수식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  
-----  
----- 지도  
· 감독 -----.

② ----- 학교급식-----  
-----  
농수산물-----  
----- 지도·감독  
해야 한다.

③ 학교등이 제8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된 식품비를 교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을 경우에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